의안번호	제 443 호				
의 결	년 월 일				
연 월 일	(제 382 회)				

#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##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443 제출연월일 : 2020년 5월 29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 1. 제안사유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 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: 백만원)

기 금 명	2019년도말 조 성 액	2020년도 운용계획				
		당초		변경		2020년도말 조 성 액
		수 입	지출	수 입	지 출	
투자진흥기금	10,008	175	0	10,175	0	20,183

**3. 의안전문** : 첨 부 (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# 붙임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 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  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 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